

(6)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탈취탑 소각로 후속악취시설 부분을 보완 정비하여 운영하기 바람.

나. 조사의견

위생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업무 성실로 정상 가동은 하고 있었으나 조사를 통하여 당초 계획이 정확한 산출 판단내역 미흡, 충분한 검토의 부족등으로 인한 외부 분뇨의 유입이 입증되는 한편 처리 과정에서 아직도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조사특위 운영중 위원 질문시 정확한 답변 없이 기피성 발언을 하는 등 업무 파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현재로선 처리용량 부족은 없으나 앞으로 분뇨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대두 될 각종 시안에 대하여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 5 】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11. 6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양여금, 도비보조금의 교부 지연등으로 사업의 적정추진이 지난하고 '94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와 유사성격인 동회계를 폐지코져 함.

주요골자

1.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 6 】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11. 6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10년간 존치되었던 고문변호사 수당을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상향 조정코자 함.

주요골자

고문변호사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4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소송비용등) 제2항중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